쟁점: 북한인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이 장 희 (한국외대학교 대외부총장)

최근들어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그리고 한국내 보수성향의종교계와 시민단체가 북한 인권문제를 집요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들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는 이 문제에 소극적 정책을 펴온 한국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2004년 7월 미국 하원이 북한민주화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금년5월 미국에 망명한 탈북자6명이 미국 전역에 북한인권실상을 알리면서 미국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은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인권문제개선과 대북지원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가열되고 있다. 물론 북한 인권이 매우 열악해서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새로 창설된 UN 인권이사회가 이 달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첫 회의의 주요의제로 북한인권문제를 채택하는것으로 보아도 사안의중대성은짐작이 간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북한인권문제를 직설적으로 감정적으로 표출한다고 해서 당장 북한 인권이 개선되느냐는 것이다. 북한인권문제

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둘러싸고는 두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다. 우선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시공을 초월하여 적용돼야하므로 예외가 없기에 다른 나라처럼 북한에게도 직접적으로 유무형의 물리적 압력을 가해 당장 개선시켜야한다는 북한인권 비판론자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지원은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 남한정부와 국제사회도 인권개선이 없는 한 대북지원을 비롯한 남북경협추진도 신중해야 한다. 나아가 남한정부가 남북대화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직접 의제로 삼아 그 개선을 요구해야한다. 따라서 남한 정부가 2003년, 2004년 2005년 계속해서UN 인권위원회에서 불참 또는 기권한 태도에매우 비판적이다.

한편 또 다른 입장은 북한체제와 북한사회의 현재 놓여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인권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북한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북한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정치적 문제로 보고 있다. 그들은 북한인권문제를 식량난에서 오는 심각한 생존권적 인권문제와 시민적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정치적 자유의 인권문제로 구분한다. 전자는 국제사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해결이 가능하고, 후자는 북한사회의 구조적 체제적 문제와 연계되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북한 인권문제 비판자들은 전자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후자의 정치적 자유의 억압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점진적 해결론자들은 북한이 정치적 자유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개혁을 못하는 것은 정치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오는 외부 안보위협 때문에 북한 스스로가 자신있게 개선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외부의 강제적 압력은 그들의 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 인권개선과 같은 민주적 자기개혁을 더욱 움츠리게

만든다. 북한은 시민사회 경험이 없어 체제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북한의 변화는 아래로부터, 즉 북한주민으로부터는 기대할 수가 없다. 북한 집권층 스스로가 그 불가피성을 실감하고 자신감을 가질 때만 개혁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해결방법은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한 매우 현실적인접근이라고볼 수있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 2004년 7월에 의회에서 제정한 북한자유화법안때문이다. 이 법안은 노골적으로 북한의 체제변화(Regime Change)를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시도한다. 이 법안에 근거해 미국은 북한 인권개선을 명분삼아 미국과 한국에 있는 많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인권 단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 북한인권 문제를 더욱 이슈화 하여 북한체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6월 초 한국에 온 예일대 재미교포2세들을 주축으로 외국인 8,000명이 가입해 있는 북한인권단체 "Link(Liberty in North Korea) "회원들도 이들과 비슷한 성향이다. 이들은5월 중순경 한국에 입국해 매일같이 시청광장, 인사동길바닥에서농성했다. 또25개 대학교 학생 500여명을 회원으로 둔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등도 6월 2일 전북대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학생전진대회 "을 열었다. 이외에도 탈북자와 국내 보수집단이 꾸린 북한민주화운동본부니 자유북한방송 같은 단체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미국의 유무형의 후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주장은 당위론적으로 정말 타당하지만, 북한의 현실과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북한체제 및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북한인권 개선의 진정성을 믿기 힘들다. 그들은 북한의 기아상태와 같은 인도주의적 생존권문제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북한의 정치적 자유와 같은 인권에만 관심을두고정치적성향의 구호만외치고있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좀 더 냉정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북한의 열악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인권참상은 물론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향후 북한 인권문제를 접근하는 데는 이러한 조치의 실효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그리고 북한의 현재 특수상황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다음과 같은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정치적 관점을 떠나 북한 실상을 사실대로 파악해야 한다. 북한인권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다양한 객관적 정보망을 형성하고 학계를 통하여 연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탈북자의 증언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피해자이기에 주관성이 개입되기 쉽다. 북한인권개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좀더 순수하게 북한의 인권문제를 고민하고 접근해 주길 바란다. 현재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는 여러 각도에서 인권자체의 개선보다도 인권을 빙자해 북한 체제의 변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오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있는 한 북한의 인권은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 미국의진정성이아쉽다

2) 인권개념에 대해 인류 보편적 관점과 더불어 북한문화와 현 상황의 특수성도고려해야한다. 서구 편향적이어서는안된다.

3) 북한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여, 당사자인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인권문제를 보아야 한다. 북한정권이 싫다고 하여 대북 식량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고통 받는것은 북한주민이다.

4) 북한도 최근 인권개선에 관련된 헌법(1998년, 2001년 개정), 형법(1999년, 2004년 개정) 및 형사소송법(1996년 개정)을 포함하여 법제

정비에 점차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UN 인권위원회 보고서 작성을 비롯한각종의요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있다는점도 주목해야한다.

5) 이라크전후 북한의 핵문제, 대량 살상무기 그리고 인권문제를 우려하는 지난 2003년 4월 16일 UN 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의 내용이 미국이 대북한 군사적 침략행위를 감행하는 빌미로 악용하는 것과 같은일이 다시일어나지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해야할 것이다.

6)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국내 시민단체 간에 공감대 형성과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일방적으로 미국의 정치적 의도성 있는 입장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특수성과 남북관계의 현실도 인정하면서 순수하게 이문제에 접근해주길바란다.

7) 한국정부는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량의 식량지원과 의약품지원, 에너지지원을 과감하게 하여야 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국제사회도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형성 뿐만 아니라, 당장 현실적인 인권현안인 북한주민의 식량난해결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은 식량문제와 같은 생존권적 인권을 제외한 시민적 정치적 인권문제는 북한의 정치체제의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혁과 연계되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구조적 체제개혁은 북한 지도부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고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유리한분위기조성을만들어주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8)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위반의 국제법적 실효성을 높이기위해서 북한이 유보하고 있는 국가간고발제도(국제인권규약B규약 제41조), 북

이 가입하고 있지 않는 개인의 국가고발제도(B규약 의정서), 고문방지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조약에 북한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할것이다.

9)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한정부는 인권보다는 인적 교류를 강조, 남북쌍방차원보다는 국제적 차원 접근이 효과적이다. 즉,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분단국인 한국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인권(Human Rights)보다는 인적교류(Human Contacts)를 우선 촉진하여 접촉유지를 지속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다. 남측이 북측에 인권문제를 제기하여 그것이 당장 개선된다면 더욱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제기하는 인권문제는 그 나마 진행되는 남북관계의 통로는 모두 차단 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북한에 인권문제에 대해 직접 요구하는 시기는 너무 서둘 것이 없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관계가 모처럼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이 크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이나 민주화보다는 남북한의 인적교류를 통한 자유로운 서방정보의 유입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이시기에 북한인권문제와 민주화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남북관계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민주화를 제기하는 방법과 관련해 남측이 직접하는 것보다 UN과 같은 국제기구나 제3국이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동서독의 경우 서독은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헬싱키 최종결의(Final Act) 제3부(인도 및 기타분야 협력)에 입각해 인적 교류의 증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문화분야의 협력과 교육분야의 협력에 제1차적 주안점을 두었다. 즉, 동독 국민에게 인적 교류를 통해 서방의 실상을 정확히 알린 것이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가져온 주원인

이 되었다. 서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동독과의 체제논쟁을 피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 동독의 정치범들을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 서독으로 인도받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동구권의 인권을 거론한 것은 서독이 아니라 동독 및 소련과 체제우위 경쟁을 집착한 미국 등의 주변국이었다. 미국은 유럽분단의 인간적 고통을 독일보다는 간접적으로 겪고 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헬싱키 협상과정에서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인적교류보다는 소련의 인권침해를 의식하여 개별적 인권의 실현에 집중했다. 즉, 인권문제에 관한 한 분단국인 서독의 경우는 주변국과 역할분담이 이뤄졌던 것이다. 우리도 국제기구와 역할분담이 매우필요하다.

10) 북한인권은 식량인권을회복하는데 초점을두어야하고, 분단국가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큰 틀에서 북한인권과 민주화를 접근해야 한다. 북한에서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해결할 경우 북한체제와 충돌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이 경우 우리가 북한의 체제위기 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준다면 북한은 자신감을 갖고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실천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경제적 지원과 평화체제구축을 통한 북한의 민주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도록 기회를 주고실질적인도움을 줘야한다. *